##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가정폭력방지법)

[시행 2020, 6, 9] [법률 제17437호, 2020, 6, 9, 일부개정]



여성가족부(권익보호과) 02-2100-6422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·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6. 4. 28.]
- 제1조의2(기본이념)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
[본조신설 2017, 12, 12.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가정폭력"이란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.
  - 2. "가정폭력행위자"라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.
  - 3. "피해자"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.
  - 4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**제3조** 삭제 <2006. 4. 28.>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8., 2013. 7. 30., 2015. 6. 22., 2017. 12. 12., 2020. 6. 9.>
  - 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  - 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· 연구 · 교육 및 홍보
  - 3.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
  - 4.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, 직업훈련 등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
  - 5.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
  - 6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  - 7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  - 8.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
  - 9.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
  - 10.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·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· 치료프로그램 제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  - 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하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 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13.>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4조의2(가정폭력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 표하고,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. 2010. 1. 18.>

-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17., 2013. 7. 30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

- 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5. 17., 2014, 1. 21., 2014, 5. 28.>
-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 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7.>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・보급하여야 한 다. <신설 2013. 7. 30.>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>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>
-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 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1.>
- 1.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-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 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, 1, 21.>
-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 7. 30.,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4조의4(아동의 취학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·재입학·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4조의5(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)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(解雇)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- 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5. 6. 22., 2018. 3. 13., 2018. 3. 27.>
  - 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 - 2. 관련 기관 · 시설과의 연계
  - 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 - 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 보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  -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  -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> [본조신설 2009. 5. 8.]
- 제4조의7(가정폭력 추방 주간)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 6. 22.]
- 제5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하다)를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·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 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8. 3. 13.>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, 3, 13.>
  - ④ 상담소는 외국인,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, 2018. 3. 13.>
  - ⑤ 상담소의 설치 · 운영기준,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7. 12. 12., 2018. 3. 13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**제6조(상담소의 업무)**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, 7, 30., 2015, 6, 22.>
  - 1.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
  - 1의2.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
  - 2.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 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(引渡)하는 일
  - 3.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「법률 구조법, 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(이하 "법률구조법인"이라 하다)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- 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
  - 5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- 6.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 · 연구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7조(보호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 •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"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・군 수・구청장의 인가(認可)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,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, 취사원,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.
  - ④ 보호시설의 설치・운영의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(職種)과 수(數) 및 인가기준(認 可基準)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, 2, 29., 2010, 1, 18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7조의2(보호시설의 종류)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6. 9.>
  - 1. 단기보호시설 :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  - 2. 장기보호시설 :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(住居便官) 등을 제공하는 시설
  - 3. 외국인보호시설 :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  - 4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  -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8. 3. 27.> [전문개정 2007, 10, 17,]
- 제7조의3(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)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.
  - 1.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 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,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  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,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

- 3 / 8 -

사유 등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8.]

- 제7조의4(보호시설의 퇴소)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,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
  - 2.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
  - 3.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
  - 4.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

[본조신설 2009. 5. 8.]

- 제7조의5(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 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7. 30.. 2017. 12. 12.>
  - 1. 생계비
  - 2. 아동교육지원비
  - 3. 아동양육비
  - 4. 직업훈련비
  - 4의2. 퇴소 시 자립지원금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
[본조신설 2010. 2. 4.]

- 제8조(보호시설의 업무)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 다만,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,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(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, 2017. 12. 12.>
  - 1. 숙식의 제공
  - 2.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- 3. 질병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- 4. 수사 ·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  - 5.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- 6.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
  - 7.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  - 8.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
  -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 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삭제 <2015. 6. 22.>
  -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8조의2(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 급전화센터의 장, 상담소의 장,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·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09. 5. 8., 2015. 6. 22.>
  - 1. 미성년자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아니하거나 집행 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
  - ②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

- 친 자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5. 8., 2010. 1. 18.>
-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5. 8., 2010. 1. 18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제목개정 2009. 5. 8.]

- 제8조의3(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(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 다)에 대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(이하 "교육훈련시설"이라 한 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 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8. 3. 13.>
  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설립・운영하는 학교법인
  - 2. 법률구조법인
  - 3. 사회복지법인
  - 4. 그 밖의 비영리법인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  -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,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,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, 2, 29., 2010, 1, 18., 2018, 3, 13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8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・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  -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
[본조신설 2009. 5. 8.]

- 제8조의5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)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 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 [본조신설 2009. 5. 8.]
- 제9조(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)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 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3. 7. 30.> [본조신설 2010. 5. 17.]
- 제9조의3(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 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8.>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방송사업자"라 한다)에 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 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  -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[본조신설 2010. 5. 17.]

- 제9조의4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 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  -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

하여서는 아니 되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출입,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・신고자・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 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7. 30.]

- 제10조(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) ①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・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(廢止) 또는 그 운 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6. 3. 2., 2018. 3. 13.>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  - ③ 상담소의 장,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, 3, 2., 2018, 3, 13.>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 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., 2018. 3. 13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11조(감독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상담소・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 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  -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하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,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 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18. 3. 13.>
  - 1. 제5조제5항,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 - 2. 제5조제5항, 제7조제4항,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 의 조사 ·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
  - 4.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한 경우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, 업무의 정지·폐 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·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6. 3. 2.>

[전문개정 2007, 10, 17.]

제12조의2(청문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·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 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 ·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

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- 제13조의2(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,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5. 17.]

제14조(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 · 운영하는 상담소 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· 운영하거나 설치 · 운 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8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 [제목개정 2009. 5. 8.]

- 제15조(영리목적 운영의 금지)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・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・운영하여 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 [전문개정 2006, 4, 28.]
- 제16조(비밀 엄수의 의무)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09. 5. 8.]
- 제17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·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 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후련시설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09. 5. 8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18조(치료보호)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, 가족, 친지나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 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8.>
  - 1.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
  - 2. 신체적 ·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
  -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.
 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 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(求償權)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(受給者)
 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-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, 제4항의 구상권 행사(行使)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- 제19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 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5. 8., 2010. 1. 18.>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**제20조(벌칙)**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1. 21.. 2017. 12. 12.. 2018. 3. 13.>
  - 1. 제5조제2항 전단,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상담소 ·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· 운영한 자
  - 2.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·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·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

- 3.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- 제2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9. 5. 8.]

- 제2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・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 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3. 7. 30.>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, 7, 30.>
 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자
  - 2.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  - 이 부과 · 징수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3. 7. 30.>
  - ④ 삭제 <2009. 5. 8.>
  - ⑤ 삭제 <2009. 5. 8.>

**부칙** <제17437호, 2020. 6. 9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